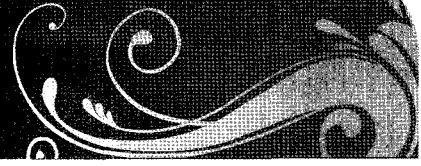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886호**  
**공포일자 : 2011. 4. 6**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 [www.mke.go.kr](http://www.mke.go.kr), 협회 [www.keea.or.kr](http://www.keea.or.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설계도서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사용료 수수 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 **부 령 : 제183호**  
**공포일자 : 2011. 4. 4**  
**담당부처 : 전력산업과**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 [www.mke.go.kr](http://www.mke.go.kr), 협회 [www.keea.or.kr](http://www.keea.or.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위탁받은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력기술인(감리원 을 포함한다)의 경력 신고·관리를 위하여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등을 발급하면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그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며, 결정된 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수수료의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생략)</p> <p>②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영 제3조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생략)</p> <p>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설〉</p>	<p>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교육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립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 ----- ----- 단 체----- ----- -----</p> <p>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 ----- 방법----- -----</p> <p>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p>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www.keea.or.kr) “입법 및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 률** : 제2011-53호  
**예고기간** : 2011. 3. 18 ~ 4. 7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00-533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http://www.nema.go.kr))

○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용도변경이 신고제('99. 5. 9)에서 허가 또는 신고제로 개정('06. 5. 9)됨에 따라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을 가져오는 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신속한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1)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소방시설이 변경되어도 건축허가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었음
  -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절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함
  
- 나.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 신설)
  - 1)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2)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도 법정 소방시설보다 완화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종전까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 및 업무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라.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1)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1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조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 2)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 1)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과징금의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사.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자에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제1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으로 다수인이 등록함에 따라 방화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인력도 기본적인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아.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 령 : 제2011-56호

예고기간 : 2011. 3. 22 ~ 4. 13

담당부서 : 소방산업과(02-2100-5387)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http://www.nema.go.kr))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 감리대상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공사 현장을 일률적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완화함으로써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반 소방공사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6조)

- 1명의 감리원이 일률적으로 5개 이하의 현장(주 5일, 1일 1개 기준)에 대해서만 방문하여 감리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 2개가 차량주행거리로 30km이 내일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산정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내

● **부 령 : 제342호**

**공포일자 : 2011. 3. 2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10-8098)**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한 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253호, 2010. 4. 12. 공포, 2011. 4. 1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 건축물인증 심사기준 및 건축물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의 적용대상 마련(안 제2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나.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마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다. 건축물인증 신청 및 처리기한의 설정(안 제6조 및 제9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건축물인증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50일 이내에 심사를 처리함.

**라. 인증서의 발급(안 제8조제1항)**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물인증을 표시하는 건축물인증 마크를 제공함

**마.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 및 공동고시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만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Q**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동의 없이 도급계약서상 주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였는데 당초 약정한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A** 보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 채권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당초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 기간이 변경된 주 계약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의 이행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주 계약상 이행 기간을 보증 채권자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이행기간을 연장하였지만 보증사고가 당초의 이행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일 경우 당초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약정한 보험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판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주 계약의 이행 기간이 당초 보험기간 내 이던 것이 보험 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 하여 보험 기간도 연장된 주 계약의 이행 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 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당초 약정한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 16976 판결). ❖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감리업자의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공사 중지된 현장의 실적은 공사중지일까지의 환산연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PQ고시 별표 3제1호나목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하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공사중지일은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begin{aligned} \therefore \text{수행실적} &: (\text{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times (\text{이행비율} \times \text{환산율})) \\ &: \text{전체공사기간} \times \text{연면적}(\text{m}^2) \end{aligned}$$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0. 30)

• 공공업무시설의 감리를 하는 중 턴키로 공사를 수주한 A사의 전기공사 하도급 신고서중 제본되어 첨부된 내역서상에 통신공사와 전기소방공사의 공사비가 포함, 하도급승인 요청이 되어

• 감리원이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도급받은 전기공사'와 같이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 통신공사비를 제외하고 승인 요청해 줄 것을 공사업자에게 지시하였으나,

• "일반전기공사"의 범주에는 소방분야 중 전기소방과, 통신공사비를 포함시켜 하도급 승인을 해도 된다 라고 사공회사에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지경부고시 제2009-160호)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 및 통신공사 분야의 하도급 검토는 「전기공사업법령」 및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위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30)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하도급 관련 사항)를 보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감리원이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와 시공사가 회의시 하도급에 관하여 하도급 검토를 안하고 지명원만 제출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리원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전기공사감리를 실시하는 공사에서 하도급이 발생시 필히 법적으로 하도급 검토를 실시하겠끔 되어있는바 하도급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감리업자 또는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수행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공공기관의 건축을 신축공사 시 발주기관이 감리비 예산부족으로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고, 부족한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별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부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공동 감리업무 수행의 가능 여부

•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호)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제3항의 경우 전력시설물 공사휴지기간 등에도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바

☞ 위 배치기준이 발주자가 공사공정의 성격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휴지기간에 최소 감리원 미 배치의 가능 여부

☞ 또한 동 운용요령 제25조에 의거 감리원 배치기준을 충족 시 공사 휴지시 감리원 미 배치의 가능 여부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따른 지명원은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하도급이 예상되는 업체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하도급의 검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11)

질의1)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공사감리 수행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외주 발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감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제33조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휴지기간 등에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란 해당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감리용역 중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감리용역비가 2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역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운용요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15)